

준법감시인 운용세칙

제 정 : 2017. 12. 29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내부통제규정에서 위임한 준법감시인의 임용, 처우 및 기타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체결 및 정원관리)

- ① 은행은 임용된 준법감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단,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고용계약 대신 보임계약을 체결한다.
- ②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경우 직원의 직종구분을 준법감시인으로 전환하며, 준법감시인의 임기만료시 직원이 정년에 이르지 않을 경우 직원의 직종구분을 일반직원 또는 임금피크직원(별도직군)으로 전환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일반직원(G1)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3조 (임기)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범위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평가)

- ① 준법감시인에 대한 평가는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성과연봉의 결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퇴직)

준법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2. 직원임용규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 (해임)

준법감시인이 상벌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보수 등)

- ① 준법감시인의 보수 및 퇴직금은 G1 본부장에 대한 내규를 준용한다.
- ② 준법감시인에 대한 기타처우는 G1 본부장에 준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부장 및 일반직원에 대한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이 세칙은 2017. 12. 29 부터 시행한다.